

 http://www.kne.co.kr 무재해 안전보건실	건설안전동향 (건설안전:22-46호)
	2022.12.2. 금요일

-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진단 현장점검 및 인터뷰**
 - 일시 / 대상 : 22.11.30.(수) / 인천용현(건축), 목암수암(토목)
 - 내용 : 안전보건관련 현장소장 및 협력업체소장 인터뷰 등
- **(전 현장) 하반기 비상사태 모의훈련 실시**
 - 일시 / 대상 : 22.11.30.(수) / 전 현장
 - 내용 : 현장 비상사태 상황대비 사전 훈련 및 개인별 업무분장 숙지

I. 건설동향

<p>중대재해, 처벌 대신 '자기규율'로 줄인다...로 드맵 발표 (뉴시스, 22.11.30)</p>	<p>정부가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노동자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현재의 '처벌' 위주 규제에서 벗어나 '자기규율' 방식으로 예방 체계를 전환한다. 그 핵심 수단으로 노사가 스스로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진단·개선하는 '위험성 평가' 제도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산업안전 감독과 법령도 전면 정비한다.</p> <p>고용노동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고용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산재 사망자는 828명, 노동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를 나타내는 '사고사망 만인율'은 0.43‰(퍼밀리아드)다. 감소 추세에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0.29‰)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수동적·타율적 규제인 현재의 '처벌·감독' 단계를 넘어 '자기규율 예방체계' 방식으로 2026년까지 중대재해를 OECD 평균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계획이다.</p> <p>고용부는 그러면서 그 핵심 수단으로 '위험성 평가'를 꼽았다.</p> <p>위험성 평가는 노사가 사업장 내 위험 요인을 스스로 파악해 개선 대책을 수립·이행하는 제도로, 2013년 도입됐다. 그러나 강제성이 없는 데다 자기규율 방식과 맞지 않는 감독과 법령은 그대로 유지돼 대부분의 기업이 실시하지 않고 있다.</p> <p>이에 정부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위험성 평가를 단계적으로 의무화한다는 계획이다. 300인 이상은 내년 안에, 300인 미만은 업종·규모별로 2024년부터 적용을 확대할 예정이다.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정 명령 또는 벌칙이 부여된다. 고용부는 산안법 개정을 통해 관련 조항을 신설할 예정이다.</p>
---	---

II. 안전보건실 공지사항

- 하반기 정기안전보건점검 시행**
 - 일시 / 대상 : 12.1.(목) / 화성태안, 광주태전
 - 현장, 시스템, 문서, 중처법 등 안전관리 준수 여부 확인
- (전 현장) 동절기 방한용품 관련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기준 안내**
 - 혹한기 근로자 방한용품 관련 산업안전관리비 운용기준에 따른 사용가능 / 불가항목 안내

III. 사내 주요 안전행사

「하반기 비상사태 모의훈련 실시」



■ 일시

- 22.11.30.(수)

■ 대상현장

- 전 현장 (사진 : 강릉교동현장)

■ 훈련목적

- 현장 비상사태 상황 발생시
직원들의 맡은 업무분장을
숙지하여 신속하게 대처하여
현장의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함

■ 훈련내용

- 사고 상황 가정하에 상황을
재연하여 모의훈련 시나리오대로
훈련 / 진행

「중대재해처벌법 수준진단 현장점검」



■ 일시

- 22.11.30.(수)

■ 대상현장

- 목감수암, 인천용현

■ 진단목적

- 안전보건 확보의무 준수 관련
현장 수준진단 및 개선

■ 주요 인터뷰 내용

-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관련 회의체 및 종사자
의견 청취에 관한 내용
- 안전보건점검 /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교육
- 작업허가제 관련

IV. 최근 재해사례

비가림 천막 설치 작업간 추락 재해사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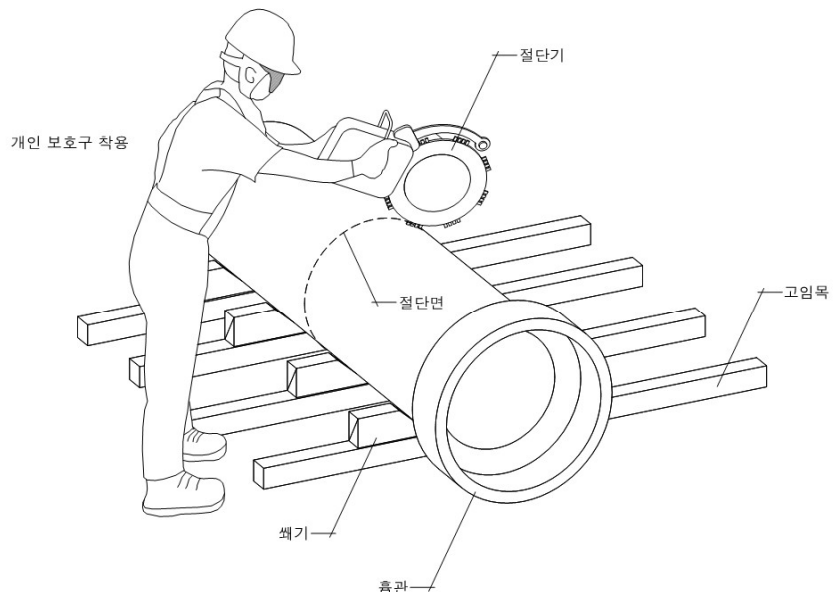
1. 재해형태 : 떨어짐
2. 재해정도 : 사망 1명 (내국인 만 73세)
3. 일시 : 2022.9.13. 13:10경 경기 고양시
4. 사고내용
 - 카페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재해자가 지상 1층 청소 및 정리작업을 하던 중, 개구부를 덮고 있던 거푸집을 정리하려던 순간 거푸집이 이탈되면서 3.6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떨어져 사망.
5. 예방대책
 - 견고한 구조의 개구부 덮개 설치
 - : 추락 방호조치로서 개구부 위에 덮개를 설치하는 경우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설치하여야함
 - 덮개 설치 후 개구 표시
 - : 개구부 덮개 설치 후 개구부임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표지판 설치 등 표시
 - 위험요인에 대한 작업자 교육 철저
 - : 작업구간내 추락 등 위험장소가 있음을 주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교육(접근통제, 개인보호구 착용 등) 실시

V. 건설현장 안전관리 Drawing(연재18-흡관 설치 작업)

□ 흡관 절단 작업

유의사항

- (가) 작업시 보안경, 마스크,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 (나) 흡관하부 고임목 및 췌기 설치
 - : 평탄치 않은 지반위에서 콘크리트 흡관 절단작업을 진행하는 때에는 흡관하부에 수평이 유지 되도록 고임목을 설치
- (다) 고속절단기 작업순서 준수
 - : 흡관을 돌려가면서 절단하여 절단날이 깨이지 않도록 조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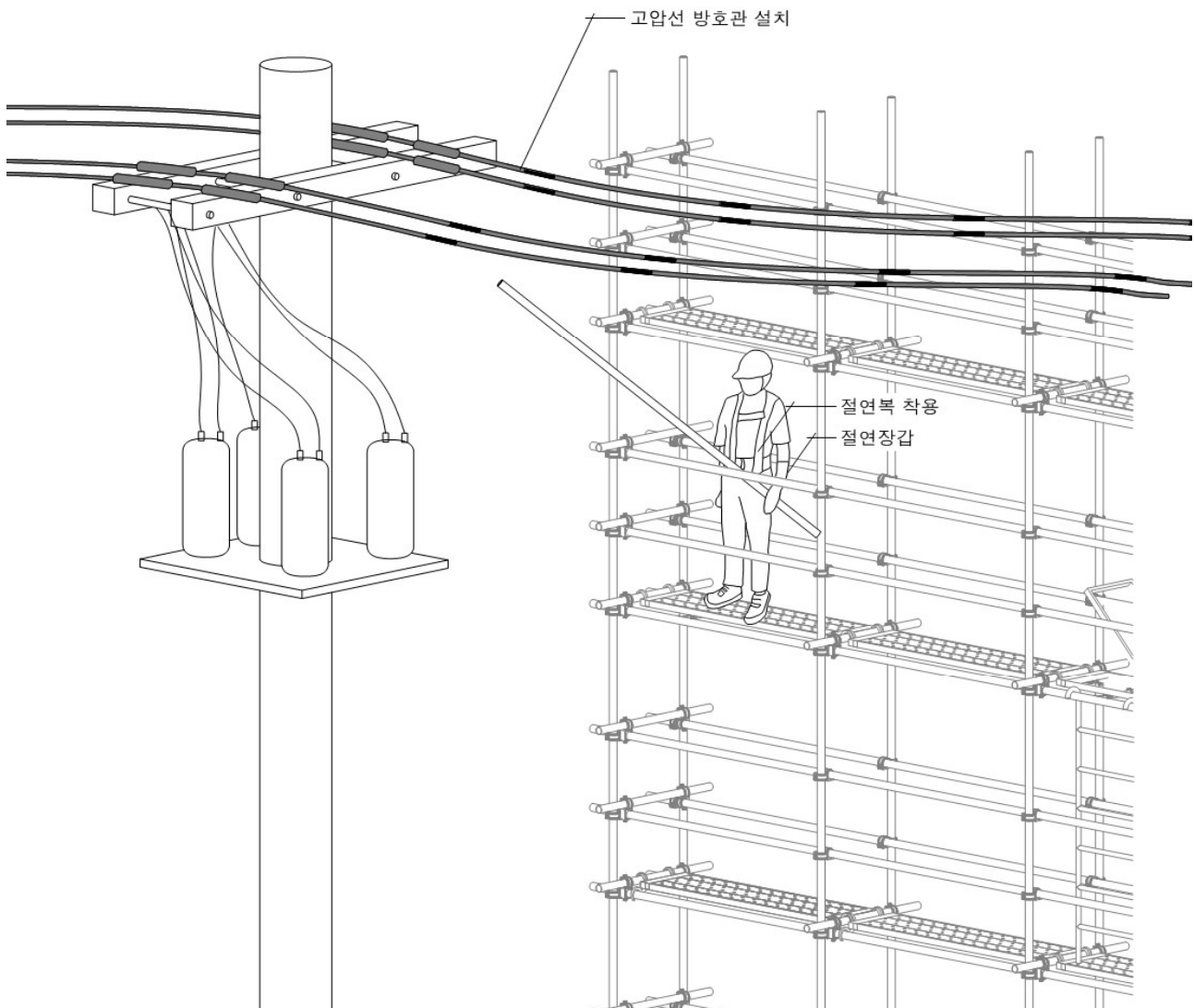


V. 건설현장 안전관리 Drawing(연재19-고압선 주변 작업)

□ 고압선 주변 작업

유의사항

- (가) 고압선 충전부 방호 조치 철저
: 고압선 인근에서 비계 설치·해체 작업시 고압선 충전부에 절연효과가 있는 고압선 방호관 설치
- (나) 절연용 보호구 지급 및 착용
: 절연장갑, 절연복 등 절연용 보호구 지급 착용 후 작업 실시
- (다)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 수립
: 작업구간 내 충전선로 등을 사전조사하고 작업 방법, 순서 등 안전작업 요령 파악



건설업 위험성평가 Model (연재15)

□ 작업명 : 창호 및 유리 작업

▶ 작업개요

- 창호에는 목재, 철재, 금속재 창호 등이 있고, 일반적으로 창호 프레임에 유리를 설치하는 작업이 주로 이루어지며 유리의 종류에는 투명유리, 칼라유리, 접합유리, 강화유리, 페어클라스, 망입유리, 유리타일, 스테인드 글라스 등 다수가 있다.
- 창호 및 유리 공사시에는 달비계 및 곤도라 작업시 추락, 자재 인양시 낙하 등의 재해가 주로 발생된다.

▶ 단위작업 및 작업별 재해발생 빈도와 강도 지표

단위작업	17-1 자재반입, 가공, 운반	▶	17-2 창호 및 유리 설치
발생빈도 (%)	0.22		1.42
발생강도	4.15		4.21
위험도 등급	★		★★★

▶ 주요 재해 사례(예시)

구분	과거 주요 재해 사례
1	달비계 사용 작업시 상부 로프가 풀리면서 추락
2	외부비계, 이동식비계에서 작업시 비계 및 작업발판 불량으로 추락
3	곤도라 사용 작업시 안전장치 미작동 등으로 인해 탑승자와 함께 지상 추락
4	지하주차장 램프에서 카고 또는 이동식크레인 사용 작업하다가 장비 전도
5	원치로 유리 인양 작업중 원치 지지용 삼각대가 꺾이면서 인양중인 유리가 낙하
6	발코니 난간대 타고 고층에서 하부층으로 내려가던중 몸의 중심을 잃고 지상 추락
7	유리파레트가 지게차의 포크에서 이탈되면서 주위 근로자를 덮쳐 사망
8	유리 거치용 파레트를 규정 이상으로 상차하여 파레트 밴드를 푸는 순간 파레트 도괴
9	고층에서 창호 또는 유리 취부 작업시 자재가 낙하하여 하부 근로자 강타
10	고속 절단기로 창호 철물 절단하다가 회전부에 신체 접촉, 절상

□ 단위 작업명 : 창호 및 유리 자재반입, 가공, 운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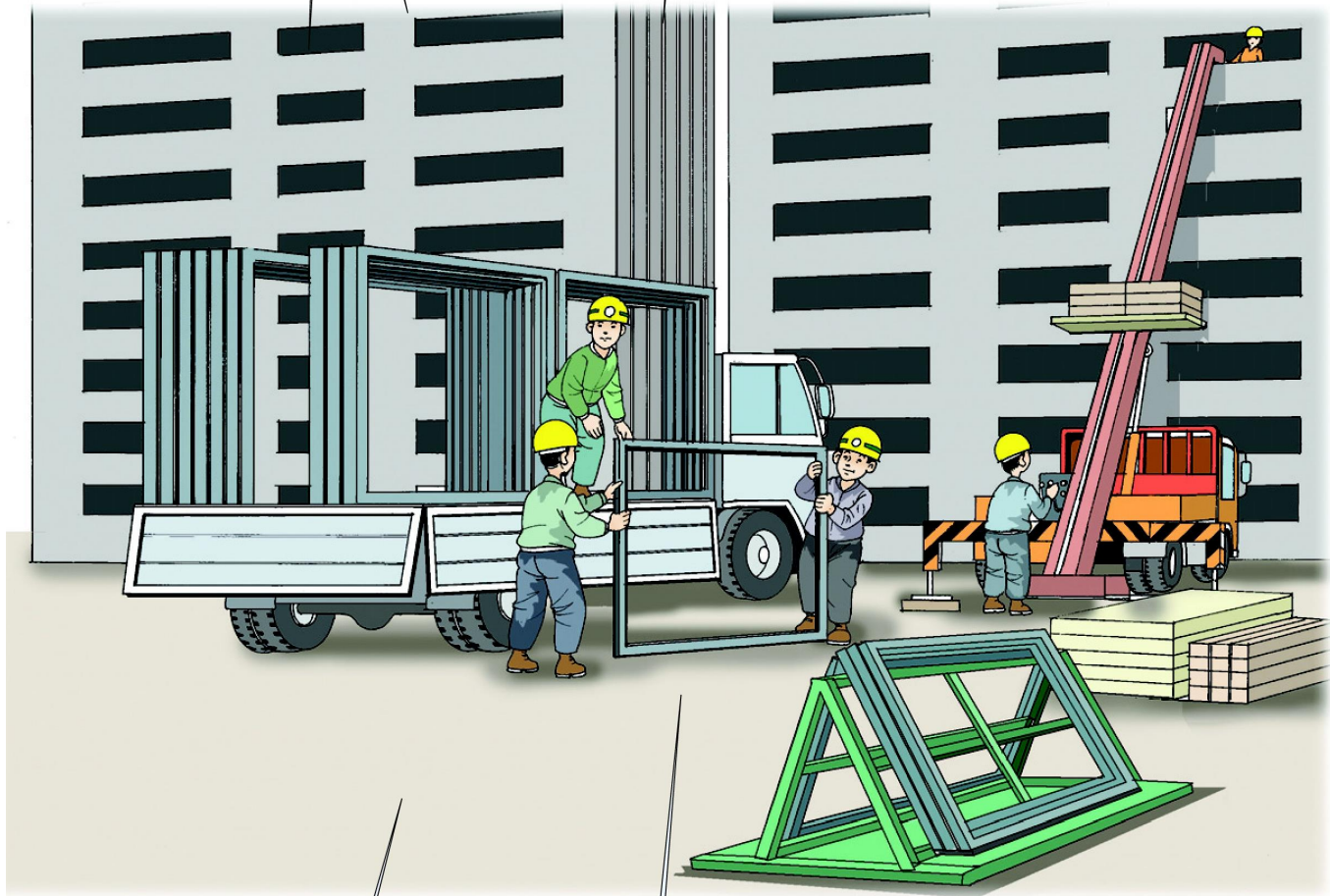
▶ 작업 위험요인

• 자재반입, 운반, 하역시 신호 및 적재방법을 확인하는가

• 인력 및 기계 운반시 적정중량을 운반하는가

• 운반, 인양시 탈락, 전도 위험은 없는가

• 고소작업대차 사용 운반시 장비전도 위험은 없는가



• 파레트에서 유리 운반시 좌우 균형을 유지하고 파레트는 견고하고 평탄한 지면에 설치되어 있는가

• 유리 절단, 운반시 안전장갑을 착용하고 있는가

• 철물 절단용 고속 절단기 회전부에 덮개가 부착되어 있는가

□ 단위 작업명 : 창호 및 유리 설치

▶ 작업 위험요인

